

동아시아학술원 규정

제 1 편 총 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학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동아시아학술원(이하 “학술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학술원은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국 및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연구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제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학술원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안에 둔다.

제4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원인사(업적평가 포함) 및 교육부 문 학사운영(교육과정·학생지도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“대학”은 “학술원”으로, “학장”은 “학술원장”으로, “대학운영위원회”는 “연구조정위원회”로 본다.

제5조(사업)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동아시아 문화와 사회의 연구 및 조사
2.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
3. 연구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·간행
4.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
5. 특수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 지원
6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7. 존경각의 설치 및 그 운영
8.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
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6조(기구) 학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학술원장
2. 연구조정위원회
3. 유교문화연구소
4. 대동문화연구원
5. 成均중국연구소
6. 서베이리서치센터
7. 인터유니버시티센터(국제한국학센터)
8. 존경각
9. 행정실

제7조(학술원장) ① 학술원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학술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학술원장은 학술원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
④ 학술원에는 학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원장의 임용절차, 임기 등은 학술

원장의 임용절차, 임기 등을 준용한다.

⑤ 학술원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연구조정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학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 이 장에서 같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학술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된다.

③ 부원장, 대학원장, 학술원 산하 연구소(원)장, 연구센터소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술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 및 연구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
5.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
7. 예·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
8.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9. 학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학술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의 심의는 학술원 기획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학술원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교원·연구원

제11조(학술원 전임교원) ① 학술원은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학술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
② 학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제12조(연구위원) ① 학술원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, 학술원 소속의 연구교원, 석좌교수, 특임교수, 초빙교원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.

② 연구위원은 학술원장이 위촉한다.

③ 학술원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필요한 경우에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연구교원) ① 학술원에는 연구교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② 특별연구교원은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4조(석좌교수 등) 학술원에는 석좌교수, 특임교수, 초빙교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상임연구원) ① 상임연구원은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2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3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4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
② 상임연구원은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(연구원보) ① 연구소(원)에는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보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소(원)장이 추천하고 학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소(원)에는 연구계획에 참가하여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전담 요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보와 같다.

제17조(객원연구원) ① 연구소(원)에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객원연구원은 연구소(원)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8조(조교) 학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제 2 편 연구기관

제 1 장 유교문화연구소

제 1 절 총 칙

제19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 이 장에서 같다)라 한다.

제20조(목적) 연구소는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유교문화 전반을 연구하여,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념과 문화양상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절 조 직

제21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소장
2. 운영위원회
3. 편집위원회

제22조(소장) ① 소장은 제18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23조(부장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분담추진하기 위하여 부장을 둘 수 있다.

② 부장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24조(연구실) ① 연구소에는 각 분야별로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실장은 연구교수이상인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25조(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26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실장 선임에 관한 사항
4.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2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절 편집위원회

제28조(구성)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29조(회의)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 장 대동문화연구원

제 1 절 총 칙

제30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. 이장에서 같다)이라 한다.

제31조(목적) 연구원은 한국 및 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여 민족문화를 천명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절 조 직

제32조(기구)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원장
2. 운영위원회
3. 기획위원회

4. 편집위원회

제33조(원장) ① 원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34조(연구부장) ① 연구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사업을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장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부장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35조(실장) ① 연구원에는 연구와 업무의 분야별 추진을 위하여 실장을 둘 수 있다.

② 실장은 연구교수 및 연구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36조(구성) ① 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연구부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3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원의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
4. 연구원의 연구비 조성,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3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절 기획위원회

제39조(구성) ①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획 및 정기간행물 이외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.

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실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0조(회의)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절 편집위원회

제41조(구성) ① 연구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국내외의 학술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은 국내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위원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成均중국연구소

제 1 절 총 칙

제42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成均중국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 이 장에서 같다)라 한다.

제43조(목적) 연구소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변동을 사회과학 기반의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對中國 미래전략 수립과 권위적 정책 제시를 통하여 사회공공재 역할로서 한국사회 및 국가에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3조의2(연구소의 운영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따르며, 연구소주요 중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절 조 직

제4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소장
2. 운영위원회
3. 편집위원회
4. 기획위원회

제45조(소장) ① 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연구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,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6조(연구실)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실을 둔다.

1. 정치외교연구실
2. 경제연구실
3. 사회문화연구실

제47조(연구실장) ①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통할한다.

②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.

③ 연구실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8조(연구팀)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팀을 둔다.

1. 연구출판팀

2. 연구기획팀
3. 국제협력팀
4. 기획조정팀

제48조의2(연구팀장) ① 연구팀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영역별 사업과 관련 활동을 통할한다.

② 연구팀장은 연구소의 기획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.

③ 연구팀장은 연구교수이상인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8조의3(한중공공외교센터) 한국과 중국간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중공공외교센터를 두고,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49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기획조정처장, 중국대학원장, 각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과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기금의 조성,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5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1조의2(자문위원) 연구소에 임기 2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
제 4 절 편집위원회

제52조(구성)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연구실장, 연구팀장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3조(회의)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절 기획위원회

제53조의2(구성) ①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획 및 정기간행물 이외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

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.

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, 연구실장, 연구팀장과 교내 전임교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소장이 제청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3조의3(회의)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서베이리서치센터

제 1 절 총 칙

제54조(명칭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55조(목적) 센터는 동아시아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행동 및 태도,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과 접목된 경험적 조사연구(서베이)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6조(사업) 센터는 제5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사회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
2. 사회조사에 관한 방법론 및 기법 연구개발
3. 사회조사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
4.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및 자료교환
5. 출판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
6.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
7. 외부위탁 용역의 조사 및 연구
8. 특수연구사업의 지원 및 보조
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절 조 직

제57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편집위원회

제58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9조(조사연구실) 센터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조사연구실을 둘 수 있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60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61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기금의 조성·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6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절 편집위원회

제63조(구성) ① 센터는 간행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제 3 편 교 육 부 문

제 1 장 교 육 과 정

제64조(교육과정) 학술원은 다음의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학사과정 연계전공 및 일반대학원과정
2. 대학원 동아시아학 교육특성화 사업
3. 인터유니버시티센터(국제한국학센터)
4. 공개강좌

제65조(교육과정의 운영)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, 학술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학사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일반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

제66조(일반대학원 학사관리위원회) ①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과별로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위원은 학술원 전임교원과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술원장과 학과장(주임교수)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된다.

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(대학원)」에 따른다.

제 3 장 인터유니버시티센터(Inter-University Center for Korean Language Studies at SKKU,국제한국학센터)

제 1 절 총 칙

제67조(명칭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인터유니버시티센터(Inter-University Center for Korean Language Studies at SKKU,국제한국학센터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라 한다.

제68조(목적) 센터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 및 대학원생을 위한 고급 학술 한국어 및 한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9조(사업) 센터는 제6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기단위 정규과정 운영
2. 하계방학 단기과정 운영
3. 국내외 학술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류 및 자료교환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절 조 직

제70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
제71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의 교수들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2조(교육부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을 둘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73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74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교육기금의 조성·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편 지 원 기 구

제 1 장 존 경 각

제76조(목적) 학술원에는 조선시대 성균관의 도서관인 ‘존경각’을 계승하여, 동아시아학 연구의 토대 조성
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존경각을 둔다.

제77조(기구) ① 존경각에는 자료실, 정보화지원실을 둔다.

② 자료실은 한적 및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열람을 담당한다.

③ 정보화지원실은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지원을 담당한다.

제78조(관장) ① 존경각에는 관장을 두며, 학술원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관장은 존경각의 업무를 주관한다.

제79조(운영위원회) ① 존경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존경각 관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.

제80조(직원) ① 존경각에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둔다.

② 직원은 관장을 보좌하여 존경각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2 장 행 정 실

제81조(행정실) ① 학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

1. 학술원의 행정업무 전반
2. 산하 연구기관 및 교육부문의 행정지원
3. 학술원의 출판업무
4.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

제82조(행정직원)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.

② 행정직원은 학술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83조(재정) ① 학술원의 재정은 교비, 외부기관의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학술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4조(회계연도) 학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85조(사업보고) 학술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
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6조(감사) 학술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4 장 연구저작물 관리

제87조(저작권 및 이용허락 의무)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학술원의 지원을 받아 학술원 소속 교원 및 연구
원 등이 작성한 연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. 다만 학술원은 해당 연구저작물의 이용권
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8조(이용동의) 연구저작자로 표시되는 연구자는 연구개시시 저작물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「대동문화연구원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
- ③ (권리·의무의 승계) 학술원(대동문화연구원)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일 이전의 대동문화연구원이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- ④ (다른 규정의 개정) 「사무분장규정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3호는 이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본교 「서베이리서치센터규정」은 폐지한다.
- ③ (권리·의무의 승계)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일 이전의 “서베이리서치센터”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